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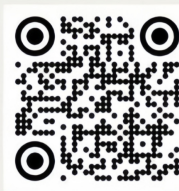
메가규탄행동 토론회

메가프로젝트,

일시 | 2026년 10월 20일(화) 오후 2시 - 5시

장소 | 희망공간 아띠(서울 종로구 성균관로12 5층)

주최 | 메가특구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



온라인 중계링크

왜 메가특구법까지

발제

자본 주도의 국가개발전략 20년, 메가프로젝트와 메가특구법으로 만나다 | 정록(메가규탄행동)

토론

노동권

김성혁(민주노동연구원)

에너지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정보인권

희우(디지털정의네트워크)

농업

엄청나(전국농민회총연맹)

기후환경

강은주(생태지평)

만들려고 하나?

목 차

발제/ 자본 주도의 국가개발전략 20년, 메가프로젝트와 메가특구법으로 만나다_ 01
정록 메가규탄행동

토론1/ 메가특구 노동 특례조항 문제점과 대안_ 07
김성혁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토론2/ 메가급 기후 부정의 촉발하는 메가프로젝트_ 12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토론3/ 기술 만능주의로 만드는 미래, 누구를 위한 것인가_ 20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토론4/ 농지와 농업용수, 농민의 권리에서 본 메가특구법의 문제_ 27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토론5/ 메가특구법과 환경규제_ 33
강은주 (사)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

[발 제]

자본 주도의 국가개발전략 20년, 메가프로젝트와 메가특구법으로 만나다

정록 메가규탄행동

0. 들어가며

지난 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국민영웅으로 치켜세우며 이들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와 전국의 AI 데이터센터 건설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해 4,700조원의 투자계획을 밝혔고, 정부는 전력, 용수, 노동력 공급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총력지원'을 선언했다.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7월부터 매월 개최하고 있고, 8월 10일 2차 회의에서 '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제정 계획을 밝혔다.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목적인다고 밝혔다. 특히 메가특구특별법 정부안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주 52시간 노동시간 제한 적용제외, 파견업종 확대 등의 노동특례조항이 알려져 큰 파장을 불러왔다.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는 '메가특구'는 지난 4월 15일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제시되어 '최고 수준 규제특례와 재정·세제·인력·R'D'를 아우르는 정책지원을 제공하는 지역 성장 거점으로 제시되었다.

AI 산업의 세계적 확장과 함께 슈퍼 사이클을 맞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호황은 '메가프로젝트'가 등장하게 된 핵심적인 조건이다. 그런데 메가프로젝트의 필수 조건으로 정부가 밝힌 'AI 시대 전기국가'와 '기업형첨단도시' 조성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지난 20여 년동안 변주되어온 '국가균형발전/성장정책'과 '자본/기업유치를 위한 규제특구'의 메가프로젝트 버전이다. AI·반도체 산업에 대한 과도한 낙관을 걷어내고 지난 20여 년 동안 국가와 자본이 손잡고 끊임없이 시도해왔던 '신자유주의적 개발'의 역사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메가프로젝트와 메가특구는 과거 지역발전/산업정책과 무엇이 같고 다른지 짚어보면서 대응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1. 신자유주의적 개발과 성장이라는 오래된 미래

2002년 11월 제정된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은 '외국인투자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자본/기업유

치를 위한 규제완화'와 결합시킨 원조 격의 법률이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규제완화'를 두 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개발정책을 전면화한다. 이때 만들어진 구조가 이후 20여 년동안 변주된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이 한 축이었다면, 2004년 전경련이 제안한 '기업도시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특별법' 제정을 통해 '자본/기업유치를 위한 규제특구' 전국화가 다른 축이었다.

이는 각기 다른 두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본 주도의 지역거점 개발 사업으로 결합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자체는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인허가권을 이양받고 추가 재정지원을 받는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축은 '자본/기업 유치'가 되고 지방정부의 각종 권한과 예산은 이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보조하기 위한 규제완화와 인프라 구축,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채워졌다. 제주, 전북, 강원특별자치도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은 현재 '메가특구법'에서 논의되는 규제완화와 비슷하게 노동, 환경, 교육, 의료 등 광범위한 영역의 규제완화와 권리 후퇴 그리고 각종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망라하고 있다. '기업도시특별법'은 '기업도시개발'라는 명목 아래 토지수용부터 주택공급까지 일체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자본에게 맡기는 법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총 9개가 설치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외국자본투자는 저조한 상황에서 수도권(송도, 청라, 영종)의 경우에는 주택 부동산 중심의 개발에 그치고 있다. 기업도시 시범사업 역시 원주, 충주, 태안, 영암/해남, 무안, 무주 등이 선정되었으나, 무안과 무주는 사업이 취소되었고 다른 곳 역시 관광 레저(골프장, 호텔) 중심의 부동산 개발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최근 KBS 보도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전국에는 67종의 특구유형이 있고, 특구는 1,281개에 달한다고 한다. 특구가 본격적으로 지역 개발 수단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때 '지역특화발전특구' 143개가 대거 지정되면서부터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특구는 비슷한 규모로 늘어났고, 문재인 정부 시기 '규제자유특구'라는 이름으로 첨단기술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346개가 대거 지정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라는 이름으로 370개가 지정됐다. 특구로 한번도 지정된 적 없는 기초지자체는 전국 226개 중 15곳에 불과했다.

한국은 익히 알다시피, 1960~70년대 정부주도로 전력, 교통, 항만, 주거 등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차관과 외채를 들여오며 수도권과 동남권(부산, 울산, 창원)을 축으로 하는 산업벨트를 구축했다. 일정한 성과를 거둔 이 전략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전면화 속에서 정부가 아닌 자본이 주도하는 산업/지역거점 개발 사업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자본의 입장에선 이미 충분한 산업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사업을 벌일 유인은 적었고, 신자유주의 아래 강화된 지구적 공급망 사슬은 중국이나 동남아 진출을 독려했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지역특구법, 기업도시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은 모두 정부와 지자체가 인프라 제공과 '파격적'인 규제완화를 내걸고 자본에게 호소하는 제도였다. 이는 '지역'의 자

생력과 결정권을 강화하는 '균형발전'이 아닌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경쟁적으로 '공모'하는 지자체간 경쟁이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자본 유치를 위해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지키기 위한 시민적 권리, 공공성, 노동권, 환경권 등은 얼마든지 내팽개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했다.

지난 20여 년동안 추진된 '지역균형발전'은 실패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누적 예산 약 20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2019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는 더욱 심해졌고 '지역불균형'을 넘어 '지역 소멸' 담론이 확산됐다. 의료, 교육, 교통 등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조차 흔들리는 지역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균형발전'이 온갖 특별법과 규제완화 조치를 내세우며 기업/자본을 유치하는데만 골몰한 결과다. 그렇다고 기업/자본 유치에 성공해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지역특구들의 현재가 보여주듯이, 대부분 관광레저, 호텔, 골프장, 주택 등 부동산 개발사업이 주를 이루며 특정 계층의 자산증식에만 기여했고, 지역은 온갖 개발사업들로 몸살을 앓게 됐다. 현재 수도권 이외의 지역들은 석탄/가스 화력발전소, 핵발전소,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 등 온갖 에너지 시설들로 가득차고 이를 수도권과 각 지역의 거점도시들로 보내는 송전선로들이 그물망처럼 얹혀있다. 각종 폐기물 매립과 소각시설도 계속 들어선다. 그나마 있는 산업단지는 원하청의 가장 말단에 위치한 단순가공, 조립 공장들이기 일쑤여서, 주민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한다. 이것이 지난 20년 동안 국가와 자본이 이윤추적과 성장을 위해 '지역'들을 수탈과 폐기의 장소로 이용해온 결과이다. 이재명 정부가 메가프로젝트로 야심차게 들고나온 '대한민국 대도약', '국가균형성장'은 이전과는 다를 수 있을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밝힌 총 4,7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투자 규모가 잠시 과거를 잊게 만들었을 뿐이다.

2.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과 메가특구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과 '규제완화'라는 자본주도의 개발전략은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균형성장'과 '메가특구'로 더욱 강화되었다. 2025년 9월, 정부는 '5극 3특 메가시티' 구상을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전국화하는 것인데, '균형발전'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골고루 잘 사는 지역이라는 구상조차 사라지고 지역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초광역권으로 지역을 통합하고 이를 중심부와 주변부로 철저히 구조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전략에서도 핵심은 여전히 기업/자본 유치를 통해 지역 성장거점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제 두루뭉술한 발전이 아닌 '성장'이 명시되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고 균형성장영향평가와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했다. 정부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행정통합을 이룬 지역에게 5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고 '특별시' 격상을 내걸며 지방정부에 초광역권 통합을 밀어붙였다. 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처리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규제자유화 추진과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

균형발전이 '초광역을 통한 성장'으로 강조되고, 규제완화는 대통령을 위원장, 민간 부위원장과 민간 위원을 대거 총원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신설로 강화되었다. 지난 4월에 열린 1차 규제

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와 재정, 세제, 인력 지원'을 아우르는 '메가특구' 계획이 발표되었다. 규제특례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 라는 3가지 유형을 제시하며 더욱 구체화되었다. '메가특구' 역시 '로봇 메가특구', '재생에너지 메가특구', '바이오 메가특구', 'AI 자율주행차 메가특구' 4개 분야가 제시되었고, 기업과 지자체가 메가특구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하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와 의결로 다양한 메가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내에 '메가특구특별법' 제정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20여 년동안 추진되며 실패해온 자본 주도의 개발전략을 '5극 3특 국가균형성장'과 '메가특구'로 통합하고 더욱 강화해 내놓았다. 그간의 실패원인을 자원의 집중부족과 기업/자본 투자 유치 실패에서 보고, 이를 만회하겠다고 내놓은 계획이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온갖 규제완화정책을 내세우며 자본투자를 희망했지만, 기업으로서는 부동산 개발과 건설산업 외에는 적절한 수익성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은 반복되었다. 바로 이때, AI 산업의 세계적 팽창과 그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폭발은 '메가프로젝트'라는 대규모 자본투자 발표로 이어졌고, 이재명 정부는 이를 '대한민국 대도약 기회'라며 한국 사회의 모든 자원을 '메가프로젝트'에 올인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했다. 'AI 시대 전기국가', '기업형첨단도시', '메가특구특별법'은 그렇게 등장했다.

3. 메가프로젝트, 이윤을 위한 사회생태적 자원 포식 프로젝트

메가프로젝트와 메가특구가 지난 20년의 국가개발전략과 가장 달라보이는 점은 총 4,700조 원에 이르는 재벌들의 엄청난 투자계획이다. 그동안 온갖 규제완화로 기업/자본을 유치하려고 했지만, 기업들은 쉽사리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지역을 수탈하고 지자체를 이용했다. 그런데 이번 메가프로젝트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앞장서 반도체 공장 대규모 건설투자를 공언하고 나섰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하루라도 빨리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과 용수, 토지를 제공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하겠다고 나섰고, 정부가 메가프로젝트로 화답했다. 정부와 자본 모두 공히 강조하는 것은 '속도전'이다. 정부는 이를 총력지원해 용인 SK 일반산단은 12년을 앞당겨 2033년 준공, 용인 삼성 국가산단은 7년을 앞당겨 2040년 준공 목표를 밝혔고, 광주 반도체 공장은 2030년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부지 확보를 위해 군공항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

왜 속도전일까. 현재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삼성과 SK는 AI 산업의 엄청난 팽창에 힘입어, 반도체가 없어서 못파는 상황이 되었고 공장 증설을 통한 생산량 확대는 고스란히 엄청난 이윤으로 돌아오게 된다. 4,70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설비투자 계획이 나온 이유다. 그동안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경기 사이클 산업이었는데, AI 산업에 대한 과도한 낙관은 지금 누리고 있는 반도체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수익성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2조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는 과도한 투자로 인한 'AI 거품' 우려는 커지고 있다. 현금이 바닥난 빅테크 기업들은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회사채가 정크본드 수준의 고금리로 팔리는 상황이다. 이제 AI 산업은 금융권에서 주가의 성장가능성이 아니라, 채권의 투자 수익 회수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경기를 좌지우지 하는 AI 산업 호황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러한 위험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전략은 간단하다. 현재의 호황이 지속된다면 설비투자를 지속하고, AI 거품이 터지고 불황이 도래하면 투자계획을 철회한다. 다만 언제끝날지 모르는 이 호황기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 생산량 증대를 위한 '속도전'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기업의 이윤을 위해, 대규모 자본투자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온갖 규제완화와 함께 전력, 용수, 토지와 같은 생태환경 자원을 총동원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정부때문에 한국사회가 짊어지게 되는 위험과 피해이다. 2025년 현재 전체 사용전력의 40%에 해당하는 40GW의 추가전력 생산과 하루 200만톤 이상의 용수 공급을 정부는 공언했다. 이 정도 자원을 소모하며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에 맞춰 정부는 장시간 불안정 노동을 마음껏 허용하려 한다. 이를 위해 핵발전소, 가스발전소, 재생에너지까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신규댐을 건설하고 기존 댐을 높여서 물을 만들어내겠다고 한다. 이는 반도체 공장 건설에 앞서, 정부가 구축하겠다는 전력과 용수, 기업형첨단도시라는 인프라 건설로 인해 이 정도 규모로 동원되고 파헤쳐진 사회생태적 자원과 환경의 파괴를 우리가 고스란히 겪는 것이다. 메가프로젝트는 더욱 큰 규모와 강도로 더 큰 폭력을 수반하며 한국 사회 전체를 동원하고 파헤치며 포식할 것이다. '전력, 용수, 토지, 노동력'과 같은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지만, 이것은 기업이 만들 수 없으니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최태원 SK 회장의 발언은 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

메가프로젝트는 지난 20년 동안의 국가개발전략과는 달리 엄청난 투자가 발표되며 마치 '성공'할 것처럼 선전되지만, 오직 자본의 이윤을 위해 '사회'의 자원들이 배치되고 소모되며 자본의 필요에 따라 활용되거나 버려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그 역할을 앞장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를 반복하고 있다. 또한 자본은 결코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기며 남겨진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된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메가프로젝트는 단지 지난 20년의 반복이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신자유주의적 개발정책이 '자본 주도의 개발'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자본유치'에 목매는 것이었다면, 메가프로젝트는 201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제도와 규칙들의 붕괴와 함께 이제는 국가가 자원과 제도를 자본에게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본 축적 위험을 함께 떠안고 시장과 인프라까지 직접 조직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메가프로젝트가 저성장을 벗어날 '저성장을 끊고 대도약을 이룰 마지막 기회'라며 올인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과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AX 가속화)과 같은 AI 산업중심의 시스템 전환으로도 드러나고 있다. 즉 메가프로젝트 그리고 메가특구법은 '자본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AI 반도체 자본이 착취 수탈할 수 있도록 '사회를 개조'하는 것이다.

4. 메가특구특별법 저지 투쟁으로 메가프로젝트에 고삐를 조이자

6월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되고 10여일 후,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위'를

구성하고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맞춤형 입법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제정을 공언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도 기반시설과 정주여건을 신속히 갖추기 위해 메가특구법 연내 제정계획이 다시 확인되었다. 9월 중 발의될 것이라고 알려졌던 메가특구법은 기간제, 파견노동, 장시간 노동 확대 등을 허용하는 노동특례 조항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노동계와 사회적 대화를 시도하며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새다.

현재까지 메가특구법 당정협약안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언론을 통해 노동, 환경, 에너지, 세제, 행정규제, 교육, 의료, 개인정보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포괄적인 규제완화조치를 담을 계획임이 알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최고수준의 규제특례를 표방했고 이는 '메가프로젝트'를 만나 '메가특구특별법'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발전, 성장, 풍요를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겹도록 들어왔다. 메가프로젝트와 메가특구법은 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드러내준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는 대자본의 성장과 이윤을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제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규제'는 무엇을 위해 작동하고 존재해왔던 것일까. '규제'는 자본의 성장과 이윤추적에 걸림돌이 되기때문에 끊임없이 '완화/합리화/특례' 조치를 요구받았다.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며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자본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식량주권과 농민의 권리를,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지속가능하고 존엄함 삶을 위한 사회적-환경적 기준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 자본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해온 것이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기본권과 사회적-환경적 기준들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쓰러졌고, 노동조건을 바꾸기 위한 처절한 투쟁 속에서 노동시간, 노동안전, 중대재해에 대한 법률과 제도들이 만들어졌다. 자본의 무분별한 난개발과 환경파괴는 사람도 살기 어려운 환경오염과 공해로 이어졌고, 이를 막기 위한 주민들의 투쟁 속에서 환경규제와 절차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메가특구법은 이렇게 사회적 투쟁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와 기준들을 정부가 앞장서 무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메가특구법 저지 투쟁을 통해 자본의 이윤추구도 사회적 통제와 규제 아래 놓여 있어야 한다는 큰 원칙을 다시 세워가야 한다. AI 전기국가, 기업형첨단도시라는 인프라도 자본의 무제한의 자유가 아닌 사회생태적 공공성이라는 원칙 아래 처음부터 재구성되어야 한다. 정부여당이 연내 제정을 공언하는 메가특구법을 막아내는 싸움을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메가프로젝트'의 고삐를 노동자, 농민, 시민들이 쥐고 조일 수 있어야 한다.

[토론: 노동권]

메가특구 노동 특례조항 문제점과 대안

김성혁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의 고소득 전문직·R&D 인력에 주 52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수당 대신 일반 수당을 적용

- 고소득(근로소득 상위 0%) 및 직무(연구개발, 관리직, 금융 등) 전문성이 필수 전제 조건.
- 고소득 및 전문직에 한정된 핀셋 특례라는 수사와 달리, 특구 핵심 사업장에서 다수의 노동자가 근로시간 규제(주52시간제 및 연장근로수당)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전면적인 규제 제외(노동시간 상한, 휴게, 휴일, 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 없음)로 공짜노동의 합법화 우려
-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을 차용한 제도로, 일한 시간이 아닌 성과로 보상받는 직군으로 간주, 출퇴근 및 근로시간 산정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며, 연장·야간 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면제.
- 이는 공장제 공업화 시대에 맞춰진 시간단위보상 중심의 노동법 체계를 지식기반 사회에 맞춰 성과단위보상으로 바꾸려는 시도, 합법적 포괄임금제로 악용될 수 있음.
- 과로 심화 및 건강권 침해: 주 52시간 상한제라는 최소한의 물리적 방파제가 무너지면, 성과 압박에 시달리는 연구·전문직의 노동 시간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음. 이는 뇌심혈관계 질환 등 과로사 위험이 직접적으로 상승.
- 적용 기준 하향의 '도미노 현상': 도입 초기에는 '극소수 최상위 고소득층'으로 한정하더라도, 점차 재계의 요구에 밀려 임금 기준선이 낮아질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존재. 결국 일반 사무직까지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주 52시간제 자체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라는 논리.
- 근로시간 기록산정 의무 자체의 소멸 : 이는 단순한 행정부담 경감이 아니라, 산재보상체계에 서 과로성 질환의 업무 관련성은 사실상 유족과 재해노동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유일한 근거가 근로시간 기록임. 기록의무가 없어지면 과로사가 발생해도 그것이 과로였음을 증명할 수단이 없음. 특례의 결과는 '자율적 근무'가 아니라 '증명 불가능한 과로'가 됨.
- 따라서 최소한 아래 내용들이 패키지로 전제되지 않으면 논의가 성립하지 않음
 - ① 근로시간기록·보존 의무유지(특례적용자 포함,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별도규정)
 - ② 건강검진의 사업주 의무실시(요청주의가 아닌 정기·강제)
 - ③ 휴식시간 위반시 특례 자동실효
 - ④ 특례적용자의 과로성 질환 발생시 업무 관련성 입증책임 전환

○ 선택적 노동시간제 정산기간 연장, 3개월→6개월

-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26주)로 확대하면, 산술적으로 16주 연속 주 80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함
- 현행 뇌심혈관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인정기준(발병전 12주간, 주평균 60시간 초과)을 크게 웃도는 수준.
- 국가가 산재로 인정하겠다고 정한 과로 기준을, 다시 특별법으로 합법화하는 모순이 발생
- AI 기본사회를 위한 우선순위는 노동시간과 안전보장임. 이 토대위에서 소득·주거·복지 등이 추가되어야 함.

○ 기간제 사용 시간 2년→4년

-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안은 무기계약 전환 시점을 뒤로 미루는 조치가 아니라, 교체시점을 뒤로 미루는 조치임.
- 2007년 기간제법 시행 이후, “2년 도래 직전 계약종료 후 신규 채용” 관행이었음. 상한을 4년으로 늘리면 4년차 일괄 교체가 새로운 관행이 되며, 전환 의무가 발생하는 지점이 이동할 뿐임.
- 미전환시 지급하는 공정수당 같은 보완장치는 정규직 전환을 대체하지 못함.
- 특구 내 첨단기업이라는 요건은 기술인력을 떠올리게 하지만, 실제로 기간제 비중이 높은 직군은 사무·연구보조·시설·검사·물류임, 노동시간 특례의 수혜자로 거론되는 집단과 고용특례의 피해자가 되는 집단은 서로 다른 사람들임.

○ 파견근무 허용 업종, 기간 확대

- 현행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등이 엄격히 금지되고 32개 전문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음. 메가특구 법안에서는 특구 내 입주 기업(특히 첨단기술·외투기업 등)에 한해 이 빗장을 풀고 파견 허용 업종을 대폭 확대하려 함.
- 특히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해 노동부 장관이 파견 대상 업무 확대와 기간 연장을 허용
- 현행 법정 파견 기간은 최대 2년(기본 1년 + 연장 1년)이며, 이를 초과하면 원청 기업이 직접 고용해야 함. 메가특구 내에서는 이 기간을 상향하여 기업이 장기간 비정규직 파견 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검토 중

① 전문인력 영주 정책과의 '정합성 붕괴'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

- "귀한 인재라더니 파견직으로?": 정부는 비자 패스트트랙(K-Tech Pass 등)을 통해 외국인 '전문인력'의 영주·거주권을 보장하며 정착시키겠다고 강조. 하지만 파견 규제를 완화하면 특구 내 일자리가 안정적인 정규직이 아닌,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장기 파견직(비정규직)'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큼.
- 불안정한 고용 형태는 고급 인재들이 지방 특구 정착을 기피하고 대기업이나 해외로 탈출하

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됨.

②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 저하 우려

- 비숙련·저임금 우회로 변질: 반도체, AI, 바이오 등 메가특구가 지향하는 산업은 고도의 전문 지식과 연속성 있는 연구가 필수적임.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첨단산업 육성을 핑계로 실제로는 제조·생산 공정에 값싼 비숙련 파견 인력을 대거 투입해 비용을 아끼려는 경영계의 꼼수에 가깝다"고 비판하며, 이는 오히려 기술 숙련도를 떨어뜨려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

③ 위장도급 및 불법체류 브로커의 온상 가능성

- 외국인 파견의 사각지대: 파견 업종과 기간이 늘어나면, 특구 내 협력업체나 인력공급업체(아웃소싱 기업)들이 외국인 비전문 인력이나 유학생 등을 대거 파견직으로 흡수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중간 착취나 임금 체불 등 노동 인권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계약 종료 후 이들이 지역 사회에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간접적 게토화'를 유발할 수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 유급휴일 규제 완화·면제 검토

- 메가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 고령자 고용 노력 의무를 면제하고, 유급휴일 의무도 완화하는 방안 검토(주휴일, 공휴일 등 일부 무급화 전환)
- 유급휴일 완화는 기존 특례 입법 사례를 준용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검토

① 국내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및 역차별 논란

-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붕괴: 메가특구 내에 나란히 입주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 자본 기업은 유급휴일을 철저히 보장해야 하는 반면 외투기업은 이를 완화받게 된다.
- 내국인 근로자의 외투기업 기피: 휴일 무급화나 가산수당 제외 등 노동 조건이 후퇴할 경우, 국내 우수 인재들이 외투기업 취업을 기피하게 되어 정작 특구 내 외투기업이 인력난을 겪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②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과 사회적 합의의 난항

- 노동 조건의 후퇴: 해당 조치가 "글로벌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노동 조건을 퇴보시키고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유연화"가 될 수 있다.
- 입법 지연 리스크: 정부·여당의 추진 의지와 달리 청와대와 노동부 장관 등 정부 내부에서도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실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③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 목적과의 모순 (정책 정합성 결여)

- ‘정주 여건 개선’과 ‘노동권 축소’의 충돌: 정부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를 대폭 풀고 정주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들이 일할 외투기업의 유급휴일을 줄인다면, "한국은 일하기 까다롭고 쉬기 어려운 국가"라는 부정적 인식을 주어 최고급 인재들이 대만, 싱가포르 등 경쟁국으로 발길을 돌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전문인력 비자, 체류, 정주 절차 패스트트랙

- 비자·정주 원스톱 신속 처리: 특구 내 첨단기업이 고용하는 외국인 전문직원에 대해 비자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거주(F-2) 및 영주(F-5)권 취득 절차를 연계하여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는 전용 패스트트랙 가동
- 첨단산업 해외인재 대상의 K-Tech Pass 제도(2주 내 초고속 비자 발급, 3년 후 영주권 신청 자격 등)와 연계되어 시너지를 낼 예정
- 메가특구는 단순히 공장부지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파격적 규제 완화(입지·인허가) + 외국인 인재 비자 패스트트랙 + 주거 및 자녀 교육 인프라"를 한 번에 묶어서 제공하는 종합 정주 모델을 지향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 및 첨단산업(K-Tech Pass 등) 내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체류·정주 패스트트랙은 파격적인 혜택, 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

① 제도 설계의 핵심 상충관계(Trade-off)

- 신속성 vs 안전성·보안: 비자 심사를 2주 이내로 단축할 경우 학위·경력 검증 부실화 및 국가 첨단기술 유출(기술 안보 공백) 위험이 가중됨.
- 유인책 vs 사회적 형평성: 세제·교육 특혜가 과도할 경우 국내 우수 석·박사 인재에 대한 역차별 논란 및 두뇌 유출(Brain Drain)을 자극.
- 지방 균형 발전 vs 거주자의 자유: 거주지를 특구 내로 강제하면 제도 매력도가 급감하며, 보장할 경우 비자 취득 후 수도권·대기업으로 즉시 이탈하는 모순이 발생.
- 브로커 개입 가능성: 특구 내 입주 기업의 추천권이나 고용계약서를 악용하여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부적격자를 전문인력으로 둔갑시켜 입국시키는 '우회 경로'로 전락할 위험이 있음.

② 고급형 계도화(분리·단절) 및 정주 실패 우려

- 파격적 특혜에 대한 반발: 외국인 전문인력에게 제공되는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국제학교 정원 외 입학 특혜', '대출 한도 우대' 등은 국내 우수 인재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혜택임. 이로 인해 국내 석·박사 인재들의 역차별 불만이 불거질 수 있음.
- 특구 내 외국인 전용 인프라(주거·학교·의료)가 고립된 형태로 집중 공급될 경우, 지역 사회와 소통하지 않는 고급형 격리 지역이 형성.
- 이는 진정한 한국 사회로의 정착 대신, 단지 비자 취득만을 목적으로 잠시 머무르는 '직장 내 정거장'으로 변질되어 장기 정주성 확보를 어렵게 함.

○ 메가 특구법의 노동개악 문제점

-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특별법으로 배제하는 방식이, 근로조건 최저기준 원칙과 충돌할 수 있음.
- 메가특구라는 이유로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 예외는 곧 일반화될 수밖에 없음(현재 지역별 유치를 위한 밑바닥 경쟁).
- 메가특구법은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정부 기조에 역행함
- 반도체특별법 심사에서 10개월 넘게 논의하다가 무산된 노동특례가, 특구법으로 다시 올라왔다는 점에서 우회 입법이라는 비판.
-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특구 취지와 노동 규제 완화가 부합하지 않음.

○ 규제완화 특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 특구로

- 국가가 기업에 전력, 용수, 부지, 세제감면, 기타 인프라 등을 제공한다면, 혜택을 받은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 일자리 의무 : 지역·청년고용 비율 목표 설정, 상시지속 업무 직접고용 원칙
- 노동시간 단축 : 교대제 개편(반도체 4조3교대 → 5조3교대, 주 4일제)
- 노동안전 : 원하청 공동 안전보건 체계, 건설공기 산정시 안전기준 반영
- 노사관계 : 원청교섭 등 공급망 교섭 보장
- 생활문화 : 보육, 주거, 통근 등 정주인프라에 대한 기업 분담
- 이익환수 : 초과이익공유, 중대재해·고용약속 미이행·철수시 지원금 환수

△ 숙련 암묵지 데이터화 시 아래 기준 합의

- 당사자에 지적재산권에 준하는 권리 인정
- 고용보장, 인간 역할 증강
- 취합한 데이터는 사용 목적과 용도에 대해 노동자 동의
- 데이터로 인해 번 이익의 정당한 분배, 공급망의 비정규직까지 포함.

[토론: 에너지]

전례없는 전력수요, 기후·환경·에너지 규제완화, 기후 목표 후퇴

메가급 기후 부정의 촉발하는 메가프로젝트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 ‘기가급’ 에너지를 요구하는 메가프로젝트

- ‘3대 메가프로젝트’는 전력과 물과 같은 자원을 끊임없이 요구하며 과도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 현재에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DS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2025년 Scope 1,2 기준 13.8MtCO₂Eq)은 대전광역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2023년 직접+간접 배출량 10.4MtCO₂Eq)의 1.3배에 이르고, 전력 사용량(2025년 36.1TWh)은 인천과 광주 전력사용량(2025년 26.3TWh, 9.3TWh)를 합한 것과 유사하다.
- 그러나 메가프로젝트에는 현재 건설 중인 반도체 Fab 4기(삼성 3기+SK 1기)를 포함해 모두 17기(삼성 평택3, 용인6, 광주 2/SK 용인 4, 광주 2)의 Fab을 새로 짓고, 기존 시설을 증설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 또한 데이터센터의 경우, 2025년 1GW 남짓인 데이터센터를 20.8GW 더 까지 늘리겠다고 관련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전력 소비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천문학적인 수요이다.
- 이들 전력수요가 갖는 의미와 이를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가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왔으며, ‘메가특구 특별법’이라는 초유의 법을 통해 어떤 논의를 할 것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

: 2040년 반도체와 AIDC 전력 소비 현재 산업용 전체 전력수요보다 많아

-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는 2026년 8월, 토론회를 열고, 2040년 메가프로젝트로 인해 늘어날 전력수요를 (최대 전력수요 기준) 26.6~26.8GW로 추산했다.
- 이는 4월, 12차 전력계획 수요 예측 토론회에서 밝힌 2040년 추가 전력수요 30.9~37.3GW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것이었다.
- 이에 따라 2025년 전체 전력수요 100.9GW는 2040년 158.4~165.0GW로 1.6배에 이르는 양이다.
-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나눠보면, 반도체산업(첨단산업)이 20.6GW를 차

지하며, 데이터센터가 7.9GW이다.

- 이중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는 발표가 있을 때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4월 12차 전력계획 전력 수요 잠정안을 발표할 때만 해도 4GW였던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는 6월, 메가프로젝트 발표 때에는 8.4 GW, 8월 12차 전력계획 전력수요 재잠정안 발표 때에는 20.8GW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 이는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반도체, 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구체적인 실적이나 예측 모델을 갖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 업체들의 전망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즉 해당 업체에서 “2040년 전력수요가 00GW 정도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라는 막연한 전망치를 갖고 국가 전력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정부도 이와 같은 업계 추산치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 8월 전력계획 전력수요 재산정에서는 업계 추산치 20.8GW 중 1단계 10.8GW만 반영하고, 나머지 10GW는 추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 하지만 이것으로 역시도 ‘거품’이다.
- 지난 10월 13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령(Phantom) 데이터센터’ 문제를 언급하며, 전력회사와 주정부가 데이터센터에 대한 보증금과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시장 조사 기관 우드 맥킨지에 따르면, 전력회사에 접속된 데이터센터 요청 중 실제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는 2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이에 전력회사 엑셀론은 전력 공급을 위한 상세설계와 건설 이전에 데이터센터 업체에 재정적 약정과 담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기 전력수요가 18GW에서 11GW로 줄고, 담보로 10억 달러(약 1.3조원)이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 또 데이터센터 건설이 집중되는 텍사스 주의 경우, 현재 12.8GW의 데이터센터 전력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전력망 연결 수요가 400GW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 텍사스주는 해당 프로젝트가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1MW당 5만 달러(약 6,700만원)의 엔지니어링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500MW짜리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면 2,500만 달러(약 335억 원)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 식이다.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전력수요에 대해 이런 절차를 갖고 있지도 않으며, 진행할 계획도 없다.
- 최근 한전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 5년 치 전기요금 25조 원을 선불로 내고, 세 부적인 금리 등을 협상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현재 실적이 5년까지 이어질 지를 상수로 두고 비용을 집행하기는 부담스럽다”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 전력산업이 민영화된 국가에서 전력 계약은 ‘일방적인 공급’이 아니라, 명확한 전력수요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계약’이다. 즉 계약을 어기거나 전력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전력은 공기업 독점을 통한 ‘무제한 전력 공급’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이뤄왔으며, 이것이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 그러나 이런 시스템이 역설적으로 “부담은 공공이 떠안고, 이익은 민간 기업이 가져가는 구조”를 안정화시킨 것 역시 사실이다.

- 전력산업의 공공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며, 전력산업 민영화가 갖고 올 폐해 또한 너무나 명확하다. 그러나 메가프로젝트는 그동안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 온 기존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새로운 논쟁거리를 던진다.
- 1970-80년대 개발주의 시대, ‘전력 수급의 안정성’, ‘값싼 전력’이란 이름으로 추진해 온 전력 정책은 이제 기후 목표와 기후정의 달성이란 새로운 가치가 추가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한편, 12차 전력계획 전력수요 재산정 결과 나온 2040년 우리나라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산업 전체 전력소비량은 348.5TWh 로 2025년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전체(280.2TWh)의 1.2 배에 이른다.
- 또 2040년 전체 전력 소비 중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두 가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이르게 된다.
- 14년이란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전력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문제 이외에도 특정 산업이 이렇게 많은 자원을 ‘독식’해도 될 것인지, 또 이러한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공급은 비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발생할 다양한 지역 불평등과 차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다.



■ 특별법에 특별법이 없어진 형태, 기후·환경·에너지 규제 완화

- 1990년대 말 이후 환경운동 진영은 초법적인 ‘전원개발촉진법’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왔다.
- 1970년대 핵발전소 건설이 원활하게 건설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전원(電源) 시설’ 선정과 함께 30여 가지 인허가를 얻을 것으로 인정해 주는 의제(擬制) 조항을 담고 있다.

- 이 법에 따라 많은 발전소와 송전선로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조차 행사하지 못했으며,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지자체 역시 중앙정부의 계획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 그러나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되기 전부터 반도체와 AI 산업이 강조되면서 기존 전원개발 촉진법에 새로운 특별법이 없어지는 형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법률명	현재 상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2022년 2월 제정. 8월 시행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법)	2025년 3월 제정. 9월 시행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2026년 2월 제정. 8월 시행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특별법)	2026년 3월 제정. 9월 시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특별법)	2026년 6월 제정. 2027년 3월 시행

- 이들 지원 중 상당수는 반도체 산업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산단이 제정될 당시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으나, 이후 ‘반도체 특별법’ 이 제정되면서 내용이 더욱 보강되었다.

지원·특례	주요 내용	근거·출처
전력 공급시설의 공공 비용 부담	반도체클러스터 전기공급시설을 신속히 조성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	반도체특별법 제14조제1항 제1호
재생에너지·수소발전 관련 공급시설 지원	지원 대상 전력에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발전을 포함	반도체특별법 제14조제1항 제1호
국가 전력·용수 계획에 반영 의무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이중화 시설 포함) - 전력망·용수망·도로망 설치·확충을 전력수급기본계획·국가수도기본계획 등에 반영	반도체특별법 제18조제1항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면제	기반시설 조성 등 사업의 예타 우선 선정 및 신속 추진, 특별히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면제 가능. 공기업 사업도 면제 신청 가능	반도체특별법 제24·25조
인허가 의제·신속처리	클러스터 조성계획 승인 시 사전 협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기반시설 인허가 지연 시 신속처리 신청 가능	반도체특별법 제26·27조;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9조.

지원·특례	주요 내용	근거·출처
기존 특화단지에도 지원 적용	법 시행 전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설치 중이거나 완료된 생산·기반시설 등에도 관련 지원 적용	반도체특별법 제정 부칙 제2조.
기반시설 사업비 50~100% 공공 부담의 기준	국가·지자체 부담 비율을 시설별 총사업비의 50~100% 범위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제7항.
전력·용수 이중화 시설 전액 지원 가능	사고·장애에 대비한 이중화 시설 설치·확충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음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제2호
용수·폐수·가스·집단에너지 시설 지원	공업·생활용수, 하수도·공공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가스·집단에너지·공동구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	반도체특별법 제14조, 시행령 제20조제2~5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우선 지원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 연구개발 인프라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우선 지원. 설치 인허가 행정지원 의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0조제1~3항
전기·가스·집단에너지 등을 지원시설로 명시	전기·가스·용수·집단에너지·폐수·폐기물·통신시설·공동구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 AIDC 특별법의 경우, 아직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 AIDC의 경우, 일부 법이 인공지능 기본법이나 분산형 특구법과 연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된 울산 남구와 부산 강서구 등은 재생에너지 이외에는 전력직거래를 금지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PPA를 할 수 있다.
- 향후 만들어질 ‘메가특구법’은 이외에도 새로운 예외조항을 늘려 기존 법제도 체계가 갖고 있는 규제를 우회하는 방향을 계속 만들 것으로 보인다.

구분	지원·특례	주요 내용	근거
시행 중	구축·운영 행정·재정 지원	AI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중소기업·연구기관 이용, 지역별 인프라 균형발전 지원의 일반 근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시행령 미정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우선 설치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우선 설치와 부대시설 지원 근거	AIDC 특별법 제12·13조
시행령 미정	인허가 일괄처리	과기정통부장관에게 관련 인허가 일괄처리를 신청하고 관계기관의 신속한 검토·통지를 받는 절차	AIDC 특별법 제18조.

구분	지원·특례	주요 내용	근거
시행령 미정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비수도권에서 AI 데이터센터 신축·확장 또는 일반 데이터센터의 AI 데이터센터 전환 시 평가 면제	AIDC 특별법 제19조제1항. 면제 가능한 전력용량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령 미정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공급 특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AI 데이터센터에 직접 공급 가능	AIDC 특별법 제20조. LNG 직거래는 제외
시행령 미정	건축·충전·주차 등 설치기준 특례	승강기, 전기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부설주차장, 미술작품 관련 규모 산정 특례	AIDC 특별법 제21조
시행령 미정	산업단지·항만배후단지 입지 특례	일정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입주 기반을 마련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 허용	AIDC 특별법 제22·23조
시행령 미정	비수도권 특구·분산에너지특화지역 연계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특구를 지정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과 연계한 활용·투자 지원방안 마련	AIDC 특별법 제24조

- 이와 별도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은 345kV 이상 송변전시설에 대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재생에너지, 핵발전과 연결된 송변전설비에 대해 ‘입지선정위원회’ 심의를 1년 +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 이 법 조항은 밀양 송전탑 투쟁 이후 만들어진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항으로 사회적 갈등을 촉발시키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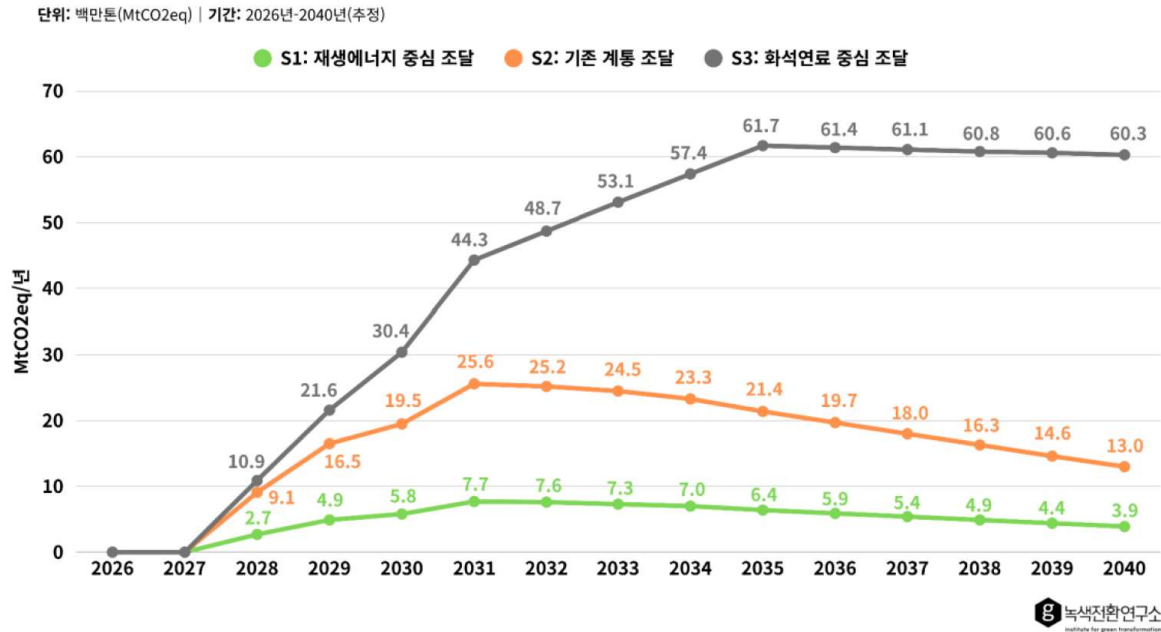
1. “송전·변전설비”란 송전탑, 송전선로, 변전소 등 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5조 제6항 제3호에 따른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에 포함된 34만5천볼트 이상인 송전·변전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중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정받은 설비를 말한다.
 -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변전설비
 - 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변전설비
 - 다.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원자력을 사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변전설비

제14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①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 기간을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현재로서는 ‘메가특구 특별법’에 에너지 관련 조항이 어떤 것이 들어갈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언론을 통해 언급된 것은 PPA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완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3년 유예 정도가 언급되었을 뿐이다.
- 이 중 핵심인 PPA의 경우, 기존 법률에서도 직접 거래를 우회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메가특구 특별법’을 통해 메가 특구 지정시 본격적인 PPA 확대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 과거 AIDC 특별법이나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논의과정에서 모두 LNG나 핵발전, SMR PPA가 조항으로 올라왔던 점, 최근 포스코가 전력과 핑크 수소 공급을 위해 독자적인 민간 핵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등을 고려할 때,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PPA가 클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의 경우, 그간 전기요금의 3.7%였던 전력기금을 2024년 7월부터 3.2%로 요율을 낮춘 바 있다. 이는 국제유가 상승에도 전기요금 동결을 추진하면서 공적 기금인 전력기금 요율을 조정한 것으로 사실상 전기요금 인하 효과로 이어진다.
- 전력기금 납부 유예는 재난을 당하거나 중소기업, 전통시장 업종에 한시적으로 추진된 바가 있지만, 본격적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된 적은 없다.
- 메가특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전기요금이 천문학적인 상황에서 전력기금 납부 유예는 사실상 전기요금 인하 정책으로 전형적인 대기업 특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한편 이와 별도로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화와 현재 일반용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를 위해 ‘일반용 데이터센터 요금제’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다.
- 이러한 계획은 메가프로젝트 계획과 맞물려 반도체와 AIDC 산업에 대한 전기요금 인하로 연결되어 공기업 한전의 적자 폭을 늘리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 기후목표 안중에 없는 메가프로젝트

[그림 2] 메가프로젝트 추가 전력수요 유발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배출량 연도별 추이



*출처: 저자 계산, 시나리오 구분은 [부록] 참고

**기존 계통의 배출계수는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및 2035 NDC,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준수요 전망에 따라 추산함.

- 녹색전환연구소는 메가프로젝트 발표 직후 메가프로젝트로 추가될 전력 수요가 유발할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산한 바 있다.
- 민간 연구소의 추산 이후 정부 차원에서 ‘기후목표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아직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현재 나온 전력수요와 각종 시나리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검증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국가기후목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토론: 정보인권]

기술 만능주의로 만드는 미래, 누구를 위한 것인가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는 단순한 토목·건설 사업이나 특정 지역의 산업 육성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연내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하고,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전력·용수·교통 등 산업 인프라를 신속하게 제공할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이 기업의 투자와 산업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으면서 노동권과 환경권,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규범을 규제완화의 대상으로만 취급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법안과 특례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부가 산업 육성과 사업 추진 속도를 앞세우고 있다는 사실은 그 정책 방향을 둘러싼 사회적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발제자가 지적했듯 메가프로젝트는 국가가 자본 축적에 필요한 인프라와 제도적 조건을 마련하고,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게 하는 개발 전략이다. 과거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토지와 물, 지역의 자원을 산업과 자본의 필요에 따라 재편했다면, 오늘날 AI·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메가프로젝트는 여기에 데이터와 인간의 신체, 노동 과정까지 산업적 자원으로 편입하려 한다. 그리고 메가특구법은 이러한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신기술의 실증과 산업화를 촉진하고 각종 규제 특례를 통해 기술과 산업의 확산을 뒷받침하려 한다.

AI 산업은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같은 물리적 기반뿐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에서 생성되는 개인정보, 노동자의 작업 과정과 숙련, 환자의 의료정보에 의존한다. 이러한 자원이 어떤 조건에서 수집되고 누구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피해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산업 육성 논의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원본데이터 활용 특례와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약화

메가특구법이 어떤 규제를 어느 범위까지 완화할 것인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미 통과된 여타 법률과 발의된 법안을 보면 AI 개발과 실증을 이유로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넓히려는 흐름은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이다. 2026년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했다. 이는 목적 외 이용 금지와 최소 수집 등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고 통제할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공공의 이익 증진’이나 ‘사회적 이익’과 같은 포괄적인 요건은 원본 개인정보 활용의 범위를 넓힐 우려가 있다.

이는 AI 기술개발을 이유로 기존의 권리 보호 원칙에 예외를 두는 일이 점점 확산될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그치지 않고 피지컬 AI, 디지털 헬스, 바이오데이터 관련 입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메가특구법을 통한 규제 특례 역시 산업 육성과 기술 실증을 명분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예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 기술개발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를 산업의 자원으로 취급하거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후순위로 미뤄서는 안 된다.

두번째, 자율주행자동차법이다. 2026년 6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자 등이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나 가명처리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법률은 개인 식별 목적의 이용과 목적 외 이용·제공을 금지하고 안전조치 및 파기 의무를 두고 있지만, 이러한 사후적 제한만으로 비식별화되지 않은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른 정보인권 침해 우려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와 일상 공간을 오가는 시민들은 자신의 얼굴과 행동 등이 언제, 어떤 목적으로 촬영·활용되는지 알기 어렵고, 그 수집을 거부하거나 이용을 통제하기도 쉽지 않다. 기술의 성능과 안전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시민을 비자발적인 데이터 수집 대상으로 삼는 구조가 제도화된 것이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대한 예외가 특정 산업의 기술개발을 명분으로 확대되는 문제를 보여준다.

메가특구법을 통한 규제 특례 역시 기술 실증과 산업화를 앞세워 이러한 예외를 확대하거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 기술 발전은 시민의 권리를 유보하거나 일상 공간을 무제한적인 데이터 수집의 장으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권리 보호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세번째, 피지컬 AI 특별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로봇과 자율 시스템의 실증 영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2026년 6월 5일 발의된 「피지컬 AI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피지컬 AI 시범지역을 조성하고, 로봇 운행과 학습을 위한 원본데이터 활용 특례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신청에 대해 60일 이내에 거부 통지가 없으면 규제특례가 승인된 것으로 보는 제도와 특례 유효기간 확대도 포함됐다.

피지컬 AI는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사람의 얼굴과 행동, 주변 환경을 포착하는 동시에 물리적

공간에서 직접 움직이는 기술이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와 물리적 안전사고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산업 실증을 위해 마련한 특례가 시민의 일상과 신체를 광범위한 실험 대상으로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자율주행자동차법, 피지컬 AI 특별법안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흐름은 사실 낯설지 않다. 예전부터 개인정보의 가명 활용에 관한 조건이 완화되는 등 데이터를 산업화하고 기업이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벌어진 법 개정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메가특구특별법의 규제특례는 개인정보 보호의 일반 원칙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메가특구특별법의 조문이 확정되기 전부터 관련 특례를 공개하고, 개별 법률과의 관계 및 권리 침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노동자의 숙련을 데이터화하고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피지컬 AI

앞서 살펴본 개인정보 원본 활용의 문제는 개인의 정보가 AI 기술개발을 위한 자원으로 동원되는 데 그치지 않는다. AI를 산업 현장에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노동자의 작업 과정과 숙련, 경험에서 축적된 지식 역시 데이터로 수집·전환되어 기술개발의 자원이 된다. 정부는 피지컬 AI를 주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실제 작업 환경에서 작동하는 AI 모델과 로봇 기술의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메가프로젝트와 메가특구를 통한 산업 육성 구상 역시 이러한 기술의 개발과 현장 적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살펴봐야 할 것은 기술의 성능과 생산성 향상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데이터와 숙련이 어떤 방식으로 수집되고 활용되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는가 하는 문제다.

피지컬 AI의 개발과 운영에는 카메라와 센서 등을 통해 수집한 영상·음성정보, 사람의 움직임과 작업 순서, 작업 속도와 결과에 관한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에는 노동자의 얼굴이나 신체 움직임 등 개인정보뿐 아니라 오랜 경험을 통해 형성된 숙련과 판단, 작업 방식이 담길 수 있다. 노동자가 자신의 작업 데이터를 제공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는지, 다른 데이터와 결합해 무엇을 추론하는지, 개발된 AI 모델이 이후 어떻게 활용되는지까지 통제하기는 어렵다.

특히 사업장에서는 고용관계의 특성상 노동자가 데이터 수집이나 이용에 실질적으로 동의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작업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단순히 기업의 기술개발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문제로만 다루서는 안 된다. 노동자가 자신의 정보와 숙련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 권리, 부당한 수집과 이용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데이터 활용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함께 보장해야 한다.

더욱이 노동자의 숙련을 데이터화하는 것은 지식과 경험을 보존하거나 작업을 보조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지만, 노동자의 업무를 대체하거나 작업 속도와 수행 방식을 감시·평가하는 데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노동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작업자의 성과를 측정하고 업무를 배분하

거나 인력 감축의 근거로 활용된다면, 노동자는 자신의 작업 방식과 평가 기준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알고리즘의 판단에 종속될 수 있다. 피지컬 AI가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에서는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와 직무의 변화뿐 아니라, 인간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안전 위험과 사고 책임의 문제도 중요해진다. 기술 도입의 편익은 기업과 산업에 돌아가는 반면, 노동 강도의 증가나 일자리 상실, 감시 강화와 안전 위험은 노동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야 한다.

따라서 피지컬 AI 정책은 제조 현장의 데이터 확보와 기술 실증, 산업화를 지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작업 데이터가 수집되는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 수집하며, 노동 감시나 인사평가 등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 노동자가 데이터의 수집·이용과 자동화 도입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노동조합과 함께 관련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자동화로 인해 직무와 고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에 대한 사전 논의와 보호 대책이 뒤따라야 하며, 피지컬 AI가 초래하는 안전 위험에 대해서도 책임 주체와 구제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한다. 노동자의 숙련과 경험을 기술개발의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정작 그 기술의 도입과 운영, 데이터 활용에 관한 결정에서 노동자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피지컬 AI의 발전은 노동자의 정보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동자가 기술 도입의 대상이 아니라 그 방향을 함께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의료데이터: 환자의 기록이 산업 클러스터의 자원이 될 때

노동자의 숙련과 작업 데이터가 피지컬 AI 개발의 자원으로 전환되듯, 의료데이터 역시 AI·바이오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의료데이터에는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 영상정보, 유전정보 등 개인의 신체와 건강 상태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 공익적 연구에 기여할 수 있지만, 산업적 활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환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제공되고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는지 알기 어렵거나 그 이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의료데이터는 여러 정보와 결합될 경우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에 관한 민감한 사실을 드러낼 수 있어, 정보 유출뿐 아니라 재식별과 목적 외 이용에 따른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

양산 부산대학교병원의 의료데이터 관련 사업을 비롯해 의료기관과 산업계가 협력하는 AI·바이오 연구개발 사업은 의료데이터가 공공의료 현장과 산업정책을 잇는 자원으로 활용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 활용의 규모나 산업적 성과만이 아니다. 어떤 데이터가 어떤 목적으로 수집·제공되는지,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지, 가명처리 등 보호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데이터 제공과 활용을 심의하는 기구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특히 공익적 연구와 상업적 제품 개발은 목적과 이익의 귀속이 다를 수 있으므로, 두 가지를 모두 막연히 ‘의료 발전’이나 ‘공공의 이익’으로 묶어 환자의 정보 제공과 활용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의료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이 확대될수록 환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실제 데이터 활용 사이의 간극도 살펴봐야 한다.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정보를 제공한 환자가 그 정보의 후속 활용까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가명처리나 접근 통제 등의 안전조치가 있더라도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정보가 여러 기관과 기업을 거쳐 활용될수록 환자가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제기하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활용의 목적과 범위, 제공받는 주체, 보유 기간, 재제공 여부, 보호조치와 피해 구제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자가 자신의 정보 이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알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의료데이터를 산업 경쟁력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공공의료의 역할을 약화시키거나 환자의 권리를 산업적 이익보다 후순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 공공의료기관이 축적한 데이터는 환자와 의료진, 공공의료 체계가 오랜 시간 형성해 온 사회적 자산이다. 그 활용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익적 연구와 상업적 활용의 목적 및 조건을 구분하고, 환자의 정보인권을 보장하며, 데이터 활용으로 발생하는 편익이 공공의료의 발전과 환자의 이익으로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데이터의 활용은 산업의 요구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권리와 공공성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 필요성과 조건을 정해야 한다.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본 메가특구 및 관련 AI·데이터 입법

메가프로젝트와 메가특구 정책은 산업 육성만으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공공 인프라와 사회적 자원을 투입하고 시민의 권리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면, 정보인권과 노동권, 안전, 공공성을 우선해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개인정보 관련 규제특례를 공개하고 입법 전에 사회적 검증을 실시하라.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 법률에서 추진하는 규제특례의 구체적인 조문과 적용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 원본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적용 제외가 기존 보호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시민사회와 영향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특례의 내용과 영향이 충분히 공개·검토되기 전까지 입법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법의 AI 특례를 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우회하는 별도 특례 입법을 중단하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AI 특례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피지컬 AI의 개발과 실증을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우회하는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지 말고, 기존 법체계 안에서 통제와 책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얼굴·음성·행동정보 등 개인을 식별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 정보는 수집 목적과 장소,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불가피한 수집에도 최소 수집과 사전 고지, 가능한 경우 비식별 처리 등 보호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셋째, 주민과 노동자의 알 권리·참여권을 보장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라.

AI·로봇·자율주행 실증 구역에서 어떤 장치가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어디로 전송해 어떻게 활용하는지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주민과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권영향평가로 검토하고 결과와 개선 조치를 공개해야 한다. 영향받는 사람들이 평가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위험과 인권 침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기술의 속도가 아니라 권리와 공공성을 기준으로

메가프로젝트와 AI 산업정책은 기술 발전의 속도나 기업의 투자 규모만으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어떤 사회적 자원이 투입되는지, 누구의 데이터와 노동이 활용되는지, 위험과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어떤 구제 수단이 보장되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개인정보는 기업이 필요할 때 가져다 쓸 수 있는 원자재가 아니며, 노동자의 숙련과 환자의 의료정보도 산업 발전을 위해 무조건 제공되어야 할 자원이 아니다. 피지컬 AI의 실증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의 일상과 신체가 기술 개발의 실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리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AI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정책의 설계와 결정, 기술의 도입과 운영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기본법이 규정하는 ‘영향받는 사람’은 AI로 인해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 AI 면접으로 채용 결과에 영향을 받는 구직자, 알고리즘에 따라 일감을 배정받는 노동자, AI와 로봇이 수집하는 정보의 대상이 되는 주민과 환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영향받는 사람은 기술 도입 이후 보호받아야 할 대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술이 누구를 위해 개발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단계부터 참여하고, 위험과 피해를 제기하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주체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 수립 단계의 사전 협의, 기후·환경·인권영향평가, 정보 공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 피해 구제 절차를 서로 연결된 제도로 마련해야 한다.

거대한 전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AI 메가프로젝트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지역 주민과 노동자, 환자 등 실제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업의 사후 설명이나 형식적인 의견수렴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현장의 의사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기업과 정부가 기술의 필요성과 편익을 일방적으로 정의하는 구조를 넘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위험과 편익을 함께 검토하고 사업의 조건과 운영 방식에 관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노동과 개인정보를

기업의 필요에 맞게 재편하며, 사회적 위험과 비용을 공공에 전가하는 정책 방향이다. 공공 인프라와 사회적 자원을 투입하는 정책이라면 그 기준은 기업의 투자 편의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 민주적 참여, 공공성, 책임성이어야 한다. 기술의 속도에 사회가 일방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방향과 활용 조건을 사회 구성원이 함께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메가프로젝트와 AI 산업정책이 따라야 할 민주적 통제의 원칙이다.

[토론: 농업]

농지와 농업용수, 농민의 권리에서 본 메가특구법의 문제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0. 노동특례에 가려진 땅과 물의 문제

메가특구법을 둘러싼 논쟁은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비롯한 노동특례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 법으로 하겠다는 일은 노동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에 필요한 땅과 물, 전력을 확보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앞당기는 것이 법의 주요 목적이다. 청와대는 지난 8월 10일 메가특구법을 연내 제정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단축하고, 전력과 용수, 교통 등 기반시설을 신속히 갖추겠다고 밝혔다. 그 땅과 물, 전력을 내놓아야 하는 곳은 상당 부분 농촌과 산촌이다.

정록 님의 발제에서 확인했듯 지난 20여 년간 규제특구는 지역을 자본 유치의 수단으로 만들어 왔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규제를 풀고 기반시설을 제공했다.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권리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은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취급됐다. 메가특구법은 이러한 개발방식을 광역·초광역 단위로 확대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특례를 더욱 폭넓게 허용하려는 것이다.

농지와 농업용수, 산림을 보호해 온 제도들이 어디까지 완화될 것인가. 개발사업으로 농지를 잃는 농민의 경작권과 주민의 결정권은 어떻게 되는가. 메가특구법 논의에서 농업과 농촌의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1. 메가특구법이 농업과 농촌에 미칠 영향

정부는 메가특구법을 통해 300여 개 규제특례를 마련하고, 인허가 기준 완화와 행위제한 해제, 처리기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과 지자체가 필요한 특례를 선택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에 더해, 추가로 규제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까지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풀겠다는 규제에는 농업생산 기반과 농민의 권리를 지켜온 제도들도 포함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농지법의 행위제한, 농지전용 허가와 협의, 농업용 저수지와 하천수의 이용,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수렴 등이 그것이다.

이 제도들은 농지가 무분별하게 전용되는 것을 막고,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에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거쳐야

할 규제와 절차이지만, 농민에게는 농업생산 기반과 삶의 터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다.

정부가 메가특구법을 통해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전력과 용수도 농촌의 자원과 무관하지 않다. 산업용수로 활용하려는 물은 이미 농업에 사용되고 있고, 발전시설과 송전선로를 건설하려는 땅에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 기업의 투자계획에 맞춰 개발을 앞당기다 보면 그동안 농지와 물을 보호해 온 규제와 농민의 경작권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그런데 아직 메가특구법의 당정안과 구체적인 규제특례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농지법과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가운데 어떤 규정이 특례 대상에 포함되는지조차 알 수 없다. 정부는 300여 개 규제특례를 기업에 제공하겠다고 홍보하면서, 그 규제를 완화했을 때 농업과 농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2. 법보다 먼저 진행되는 규제완화

메가특구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농촌에서는 산업과 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이 잇따르고 있다. 농업용수의 산업용수 전환, 농지의 태양광 발전 활용,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완화, 농어촌공사의 발전 의무 추진이 대표적이다.

각각 다른 제도에 따라 추진되는 정책이지만 농촌의 땅과 물을 산업과 에너지 공급에 더 많이 활용하려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정부가 메가특구법에 담으려는 규제특례가 이러한 정책들을 더욱 빠르고 쉽게 추진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물: 농업용수를 산업용수로 돌리는 국가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65만 톤의 물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0만 톤은 농업용 저수지인 나주호에서 가져올 계획이다. 나주호의 물을 사용하던 영산강 하류 농경지에는 영산강 물을 대신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일부 구간에서 수질이 6급수 수준까지 악화된 영산강 물을 농업용수로 대체하면서, 반도체 공장에는 기존 농업용 저수지의 물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약 3,000억 원을 들여 대체용수 공급시설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수질 문제와 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에 관한 대책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물 수급 전망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다. 2024년 기후대응댐을 추진할 때는 극한 가뭄에 대비할 물그릇이 부족하다고 했다.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도 2030년 과거 최대 가뭄이 발생할 경우 농업용수만 연간 2억 5,000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는 대규모 산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농업용수도 부족할 수 있다는 정부가 반도체 공장에 공급할 물부터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가뭄이 들어 농업과 산업이 같은 물을 두고 경쟁하게 되면 누구에게 먼저 물을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물 공급을 늘리기 위한 개발의 부담 역시 농촌이 떠안고 있다. 동북댐은 높이를 15m 올려 저수량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주변 농경지와 마을의 수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충남 청양·부여의 지천댐도 홍수 방어와 지역 물관리 문제로 논의되어 왔지만, 메가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산업용수 공급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산업에 필요한 물은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고, 댐 건설로 농지를 잃고 마을이 수몰되는 피해는 농촌 주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메가특구법을 통해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한다. 아직 구체적인 규제특례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하천수 사용허가와 댐 용수 배분, 농업용 저수지 이용에 관한 절차까지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면 농업용수의 이용과 배분을 둘러싼 공적 통제가 약화될 수 있다.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산업용수 공급을 앞당기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 땅: 농지는 개발을 위해 가장 쉬운 토지가 되었다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2003년 184만 6,000ha에서 2024년 150만 5,000ha로 줄었다. 20여 년 사이 약 34만ha, 서울 면적의 다섯 배가 넘는 농지가 사라졌다. 산업단지와 택지, 도로를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은 농지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정부는 농업생산 기반을 지키겠다면서도 농업진흥지역의 일부 농지를 해제하고 농지전용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다. 기업도시와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각종 개발특례도 확대됐다. 곡물자급률이 20% 안팎에 머무는 현실에서 농지 보전보다 개발사업을 우선하는 정책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서는 보상과 설계, 인허가, 공사 발주를 병행하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토지 확보와 행정절차를 앞당기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 농사짓는 농민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토지보상금을 받지만, 임차농민은 영농손실보상 등을 받더라도 대체농지를 구하지 못하면 농사를 이어갈 수 없다.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기업에는 비용을 줄이는 일이지만, 농민에게는 경작기반을 잃는 문제다. 메가특구법이 토지 확보와 인허가를 더욱 앞당긴다면 실경작농민의 경작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농지의 새로운 활용방안으로 태양광 발전을 권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묵혀둔 밭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일반 농사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10월 6일에는 펀드와 대출을 활용한 시설투자, 토지소유자에 대한 수익 배분, 일괄 인허가와 자금지원 체계까지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대통령이 주문한 '일괄 인허가'는 메가특구법이 추진하는 규제특례와도 연결된다. 농지전용 허가 와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은 농지를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아직 메가특구법에 어떤 농지 관련 특례가 포함될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개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예외가 확대될수록 농지 보전과 실경작농민의 권리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농지에 대한 규제를 기업과 발전사업자의 투자 편의를 위해 완화할 것인지, 식량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해 유지할 것인지가 메가특구법 논의에서 다뤄져야 한다.

■ 전기: 발전시설과 송전선로는 농촌과 산촌으로

메가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대규모 전력망 확충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서만 2041년까지 14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전국의 반도체 산업 투자계획에 따른 2040년 잠재 전력수요는 약 40GW에 이른다. 정부는 이러한 산업 수요에 대응해 송전망 확충을 서두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송전선로 70개와 변전소 29곳 등 99개 국가기간전력망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이 사업들이 모두 반도체 산업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대규모 산업단지의 전력 수요가 송전망 확충을 재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는 이미 산림 훼손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동해안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현장에서는 울진과 삼척, 봉화의 37개 지점에서 허가 면적을 벗어난 산림 훼손이 확인됐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곳도 있었다.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절차를 거친 사업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정부는 메가특구법을 통해 관련 절차를 더욱 단축하겠다고 한다. 현재의 환경관리와 사후감독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검토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확대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강원도는 AI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10년 안에 풍력발전 설비를 5.5GW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풍력발전 사업의 준비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규제완화도 추진되고 있다. 이미 태백산맥과 백두대간 일대에는 풍력발전시설과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을 훼손해 발전시설과 진입도로를 건설하면 토사 유출과 재해 위험이 커지고 생태계가 단절될 수 있다.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산림의 보전과 주민의 생활환경을 어느 수준까지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발전설비 확충계획에 비해 부족하다.

오히려 정부는 발전시설의 입지를 제한해 온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지난 9월 18일부터 시행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이격거리의 상한을 태양광은 주거지에서 200m, 풍력은 1,500m로 제한했다. 특히 5가구 미만이 모여 사는 주거지는 해당 이격거리 제한 기준에서 제외했다. 농촌에는 농지와 산림 사이에 한두 가구가 떨어져 사는 집이 많지만, 이런 주택은 가구 수가 적다는 이유로 이격거리 기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물론 이격거리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른 안전 관련 법령까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민의 수에 따라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기준을 달리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해 온 이격거리까지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은 농촌의 현실과 주민의 권리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농업 공공기관의 역할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MW 이상 보유한 공공기관을 보급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

다. 이에 따라 165MW 규모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한국농어촌공사가 의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최대 1조 2,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추산까지 나왔다. 실제 부담 규모는 의무 부과 방식과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농업생산 기반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발전설비 확충이라는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검토해야 한다. 농어촌공사는 농업용 저수지와 수리시설을 관리하고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노후 수리시설 정비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전설비 확충에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게 되면 농업생산 기반을 관리하는 본래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절차: 개발 속도를 높이는 동안 주민의 권한은 줄어든다

댐과 송전선로,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농민과 주민이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는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수렴,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와 조례 등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도 주민의 참여는 제한적이다. 송전선로 입지선정 과정에서 경과지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거친 사업에서도 산림 훼손과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발사업의 필요성과 입지는 정부와 사업자가 먼저 결정하고, 주민들은 뒤늦게 피해를 확인하거나 대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메가특구법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보다 기업과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인허가를 통합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구 계획과 규제특례는 기업과 광역지자체의 요구를 중심으로 마련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조정체계까지 도입하려 한다. 반면 개발로 농지를 잃거나 생활환경이 바뀌는 농민과 주민에게 어떤 참여 권한을 보장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것이 곧바로 주민참여의 축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금처럼 주민이 사업 결정 과정에 개입할 권한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발 속도만 높인다면, 기존의 문제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메가특구법이 기업과 행정기관의 결정 권한을 확대하는 만큼, 그 결정의 영향을 직접 받는 농민과 주민에게는 어떤 권한을 보장할 것인가가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3. 농민의 입장에서 메가특구법

첫째, 규제특례의 내용도 공개하지 않은 채 특별법부터 만들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정부는 300여 개 규제특례를 담겠다고 하면서도 어떤 법률의 어떤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농지법과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의 어떤 조항이 특례 대상에 포함되는지조차 알 수 없다.

기업이 요청하면 추가로 규제를 유예할 수 있다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도 마찬가지다.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도 불분명한데 특별법부터 만들겠다고 한다. 무엇을 풀어줄지도 밝히지 않은 채 규제를 풀어줄 권한부터 확보하려는 것이다.

둘째, 농지와 농업용수를 기업의 투자계획에 따라 내놓는 일을 막아야 한다.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과 농지전용 허가, 농업용수 배분에 관한 규제는 농업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기업이 사업을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이유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규제가 아니다.

나주호의 농업용수를 반도체 산업단지에 공급하려는 계획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가뭄이 발생했을 때 농업용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용수 공급부터 약속하고 있다.

셋째, 농촌을 에너지 생산기지로 만들기 위한 규제완화를 막아야 한다.

대통령은 농지전수조사를 이야기하면서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라고 권했다. 정부는 5가구 미만 농촌 주거지를 이격거리 기준에서 제외했고, 농어촌공사에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까지 부과하려 한다.

농업소득을 보장할 대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농민에게 발전수익을 권하고, 농촌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던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농지와 산림을 무분별하게 개발해서는 안 된다. 대규모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농촌에 발전시설과 송전선로를 집중시키는 방식부터 바꾸어야 한다.

넷째,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의 결정권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메가특구법은 기업과 광역지자체가 특구 계획을 세우고, 인허가를 통합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법이다. 그러나 그 사업으로 농지를 잃고, 마을이 수몰되고, 송전선로가 지나가게 되는 농민과 주민에게 어떤 결정권이 주어지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사업계획이 확정된 뒤 주민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듣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개발의 필요성과 규모, 입지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농민과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 만큼 농민과 주민에게도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킬 권한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현재의 산업적 이익을 위해 미래세대의 생태자원을 소진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농지와 산림, 물은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다. 앞으로 태어날 세대도 이용해야 할 자원이다.

기업의 투자계획은 바뀔 수 있고, 반도체 산업의 호황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공장 부지가 된 농지와 댐에 잠긴 마을, 훼손된 산림은 쉽게 되돌릴 수 없다.

지금 기업이 투자를 앞당기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미래세대가 농사를 짓고 살아갈 기반까지 내놓을 권한이 현재 세대에 있는 것은 아니다.

[토론: 기후환경]

메가특구법과 환경규제

강은주 (사)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

1. 환경규제 : 규제포획과 하향경쟁의 우려

메가특구법은 환경규제를 ‘투자를 늦추는 행정 비용’으로 다룬다. 그러나 환경규제는 시장이 값을 매기지 못하는 공공재와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을 지키는 장치다. 이 성격을 무시한 특례는 규제기관의 포획과 지역 간 규제하향경쟁을 부를 위험이 크다.

환경 피해는 외부효과, 비가역성, 불확실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오염과 서식지 훼손의 비용은 사업자가 아닌 주민과 미래 세대가 부담하고, 매립된 갯벌이나 수몰된 마을은 되돌릴 수 없으며, 영향의 크기는 사업 전에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래서 환경규제/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후에 시장이 교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예측하고 협의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로 설계되었다.

환경정책기본법이 사전예방 원칙을 명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환경 분야에서 ‘절차 단축’은 규제의 형식만 줄이는 것이 아니다. 예측의 정확성, 협의의 독립성, 참여의 실질성이 곧 규제의 내용이기 때문에, 절차를 줄이면 규제의 실체가 줄어든다.

정부는 2026년6월 말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고, 대통령은 7월 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는 같은 지역이면 기존 결과를 원용하고 새로 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메가특구법안에는 조항 264개, 일반 특례 330여 개가 담길 예정이며, 9월 발의 목표는 노동특례 이견과 소관 상임위 변경으로10월 이후로 미뤄졌다.

(1) 포획이론: 규제기관이 추진기관이 될 때

스티글러(G. Stigler, 1971)의 규제 포획이론은 규제가 장기적으로 피규제 산업의 이익에 맞게 설계되고 운영되는 경향을 설명한 바 있다. 메가특구법의 특례 구조는 포획이 용이한 방향으로 설계될 것이 우려된다.

첫째, **조직적 포획**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최고운영책임자가 규제특례와 인허가를 통합 조정하고, 원스톱 승인제로 환경 검토를 한 창구에 묶으면, 환경 협의기관은 독립적 견제자가 아니라 투자 일정의 한 단계가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반도체 산단 인허가를 신속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환경부처 스스로 사업 추진의 일원임을 자임하는 상황은 이미 시작되었다.

둘째, **절차적 포획**이다. 인허가 간주제와 짧은 협의 기한이 결합하면 규제기관의 침묵이 곧 피 규제자의 이익이 된다. 검토할 수 없을 만큼 짧은 기한은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와 같다.

셋째, **정보적 포획**이다.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자가 발주한 용역으로 작성된다. 기간이 줄어들수록 협의기관이 이를 검증할 능력은 떨어지고, 사업자와 규제기관 사이의 정보 비대칭은 커진다.

(2) 규제하향경쟁 : 메뉴판이 경쟁을 부른다

메가특구는 기업과 지자체가 계획을 직접 수립해 신청하고, 진흥법·특별법의 특례를 ‘메뉴판’처럼 골라 쓰며, 목록에 없는 특례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승인하는 구조로 설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5극3특 권역들이 앵커기업과 ‘1호 특구’를 유치하기 위해 더 넓은 환경 특례를 경쟁적으로 신청할 유인을 만든다.

규제하향경쟁(race to the bottom)의 우려가 충분하다. 이는 이미 행정통합과정에서 충분히 보여주었다. 메가특구는 국가가 경쟁의 메뉴를 직접 설계해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크다. 한 특구에 허용된 특례는 다른 특구와 일반 산단에서 ‘형평’을 명분으로 요구되기 쉽고, 결국 가장 낮은 환경 기준이 사실상의 표준/기준이 될 수 있다. 환경 특례의 문제는 ‘얼마나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어떤 견제 아래 판단하는가’의 문제이다.

2.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교훈

메가특구의 환경영향평가 단축 논리는 한국이 이미 한 번 겪은 실패와 닮아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통령의 속도 주문, 평가 기간의 정치적 단축, 사후 검증의 실패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 준 사례다.

2018년 감사원의 네 번째 4대강 감사에 따르면, 2008년 12월 착공일이 앞당겨지고 당시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필요성을 지시하였다. 착공 직전 대한하천학회 등 전문가들은 이 평가가 4개월 만에 끝났고, 다리 하나를 놓을 때도 하는 사계절 조사조차 하지 않았으며, 홍수기 모의실험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한 조사위원은 생태 분야를 ‘총체적 부실’로 평가하며, 사업 전후를 비교할 기초 자료 자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수질개선대책 수립과정의 적정성’과 ‘환경영향평가 적정성’ 두 부문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1) 핵심 지적 사항들

첫째, **평가기간의 단축**이다. 2008년 12월 착공일이 앞당겨지고 대통령이 평가 기간 단축 필요성을 지시하자, 보통 5개월과 10개월이 걸리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각각 2개월, 3개월로 줄였다.

둘째, **사전환경성검토 의견이 축소**되었다. 2009년 4~6월 사전환경성검토 때 환경부는 환경청이 검토의견에서 준설 지양, 원형 보전 같은 문구를 빼도록 했다.

셋째, **핵심항목이 빠진 평가서**에 협의가 진행되었다. 7~11월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국토청 평가서에 보 구간 조류농도 예측이 없었고, 보완을 요구했던 수질개선훈 가동보 운영 방안도 제대로 보완되지 않았으나 협의는 11월에 진행되었다.

넷째, **전문검토기관의 의견이 삭제**되었다. 미리 받아 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검토의견에 조류농도 예측이 필요하다는 등 보완이 어렵거나 부정적인 내용이 있자, 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환경부는 2008년1월 인수위에 보 설치로 하천이 호소화되어 수질오염 우려가 있고 문제가 생기면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했지만 청와대가 이 조류 관련 표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뒤로는 해당 문안을 보고서에서 빼거나 순화했다. 또한 2009년 5월 국립환경과학원 예측에서 수질대책을 시행해도 16개 보 구간 중 9곳의 조류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나왔는데도, 추가 대책 없이 6월 마스터플랜을 확정하였다.

이후 진행된 감사에서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합리적인 사업목표와 대책을 세우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환경영향은 충분히 논의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환경영향평가 검토·협의를 부당하게 수행한 데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착공 전 정책 결정 과정의 위법·부당행위는 적발되더라도 징계 요구 시효가 이미 지난 상태였다.

2011년 1월, 감사원의 1차 감사는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 문화재 조사에서 법적 절차상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2013년 이후 감사에서 부실이 드러났고, 2018년 감사에서야 평가 단축의 경위가 공식 확인되었다. 절차를 형식적으로 갖추면 사후 감사조차 그 실질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그 사이 22조 원 넘게 투입된 사업은 이미 완공되었고, 녹조와 수생태 변화라는 비용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4대강의 교훈은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정치 일정에 맞추면 사업의 질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3. 연계 이슈: 산단은 혼자 오지 않는다

메가특구는 하나의 산업단지가 아니라 공항 이전, 댐 확장, 송전망, 배후도시를 연쇄적으로 끌고 오는 사업 묶음이다. 서남권에서는 이 연쇄가 세계유산 갯벌과 국제적 철새 서식지, 이미 소송 중인 새만금 사업과 맞물려 있다. 개별 사업 단위의 평가와 특례로는 이 연결 고리를 볼 수 없다.

(1) 무안: 군공항 이전과 세계유산 갯벌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 약 250만 평을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했다. 산단을 지으려면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옮겨야 하고, 국방부 이전부지선정위원회는 8월 28일 무안군 망운면 일대(무안국제공항)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 광주 민간공항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 이전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전 시기는 반도체 부지 확보 일정에 맞춰 앞당겨지는 분위기다.

문제는 입지다. 무안(탄도만)갯벌은 2026년 7월 25일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로 세계자연유산이 되었다. 무안공항 인근(약 1.3km)의 이갯벌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의 중간 기착지다. 2020년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공항이 철새도래지 근처에 있어 조류 충돌 위험이 크고 저감 방안이 필요하다고 이미 경고했다. 그리고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조류 충돌은 유력한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었다.

세계유산 바로 옆에 군공항과 확장된 민간공항이 함께 들어서는 것은 항공 안전과 유산 보전 양쪽에서 중대한 사안이다.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개발을 결정하기 전에 세계유산위원회에 알리도록 하고, 유산영향평가(HIA)를 권고한다. 등재 석 달 만에 그 완충지대 인근에서 단축된 평가로 공항 이전을 서두른다면, 국제사회에 한 보전 약속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광주 군공항 부지 인근에는 현재 람사르 습지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장록습지가 위치하고 있다. 이 습지에 대한 생태적 영향 역시 주요한 평가대상이자 보호관리 계획이 호남 반도체 건설에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

(2) 새만금: 이미 법원이 지정한 평가 부실

새만금은 메가특구(로봇파운드리) 후보로 거론되는 지역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5년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1심에서 조류 충돌 위험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하자를 이유로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공항 부지인 수라갯벌이 대규모 조류 밀집 지역이라는 점이며, 항소심 선고는 11월 18일로 연기되었다.

법원이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이유로 국책사업 계획을 취소한 지역에서, 같은 평가를 더 짧게 만드는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다. 새만금 사례는 평가를 단축하면 사업이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송으로 사업 전체가 멈출 수 있다는 점도 보여 준다.

(3) 동북댐: ‘중고’라는 이름의 신규 댐

서남권 반도체 산단은 하루 65만 톤의 공업용수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30일 동북댐 30만 톤(여유량 5만 톤 중고 25만 톤), 주암·장흥댐 여유량 15만 톤, 보성강댐 발전용수 전환 10만 톤, 나주댐 농업용수 전환 10만 톤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기후부의 기본구상 용역이 진행되는 가운데 기존 제방에 콘크리트를 덧씌워 높이는 대신 현 동복댐에서 하류 방향으로 약 200m(또는 4~500m) 떨어진 지점에 높이 59.7m의 새 댐을 건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새 댐을 건설하면서 기존 댐은 단계적으로 철거). 저수용량은 약 9,900만 톤에서 2억 톤 이상으로 늘고, 화순·담양 일대 266~300가구가 수몰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의결되었고, 관리 주체를 국가로 전환해 약 10년의 공기를 3년 11개월로 줄이겠다는 계획이 나왔다.

동복댐은 광주시민에게 하루 25만 톤의 식수를 공급하는 상수원이지만, 가뭄 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배분 원칙은 제시되지 않았다. 2022년 가뭄 때 여수산단의 공급 차질이라는 전례도 있다. 댐을 키우거나 기존 용수를 공업용수로 돌리려면 현행법상 상위물관리계획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메가특구법에 관련 절차 중 무엇이 특례로 포함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하류 신축 방식이라면 신규 댐 수준의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하류생태계의 변화 역시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첨단산업 특수성에 맞춘 평가

법안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이라는 특수성을 평가 단축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AI 데이터센터의 환경위험은 일반 산업과 질적으로 다르다. 특수하기 때문에 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더 정교하게 평가해야 한다.

(1) 반도체의 화학물질

반도체 공정은 불산·질산 등 강산과 각종 유해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한다. 식각·세정·포토 공정에는 과불화화합물(PFAS)이 쓰이고, NF₃·SF₆·CF₄ 같은 불화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지수가 수천~수만 배 높다.

한국은 이미 그 위험을 겪었다.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는 사망자와 대규모 주민·농작물 피해를 낳았고, 이를 계기로 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었다. 2013년에는 반도체 사업장에서도 불산 누출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화학사고는 공장 담장 안에서 끝나지 않으며, 대형 펌이 밀집한 특구라면 한 공장의 사고가 인접 공장과 주거지로 번질 수 있다.

(2) 첨단산업 맞춤형 평가 항목이 필요하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대기·수질·소음·생태 등 범용 항목 중심이다. 첨단산업 특구에는 그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항목을 필수 평가 대상으로 추가해야 한다. 화학물질은 물론 DC의 냉각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발자국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대규모 공적 지원에 상응하는 기업의 환경 책임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5. 구조적 문제: 개별 특례를 넘어서

(1) 누적·광역 영향을 볼 장치가 없다

메가특구는 여러 시·도를 묶는 초광역 단위로 지정되지만, 환경영향평가는 개별 사업 단위로 이루어진다. 산단, 댐, 공항 이전, 송전선로, 배후도시가 따로 평가되면 이들이 하나의 유역과 갯벌 생태권에 주는 총량 영향은 아무도 평가하지 않는다. 특구 지정 전에 권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누적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2) 되돌릴 수 없는 영역까지 특례 대상이다

그린벨트 해제 전 형질변경 특례 등도 마찬가지이다. 땅을 깎은 뒤에는 해제 심의가 형식이 되고, 사업이 무산되면 형질이 바뀐 땅은 녹지도 산업용지도 아닌 채로 남는다. 산지전용 특례는 극한 강우가 잦아진 기후에서 산사태 위험을 키우고, 하천점용 특례는 특구 경계 밖 하류 주민과 생태계에 영향을 넘긴다. 한국이 동참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30x30 목표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3) 참여는 가장 먼저 줄고, 권한은 한곳에 모인다

절차 단축에서 가장 먼저 압축되는 것은 주민설명회, 공청회, 의견 제출 기간이다. 정부는 노동 특례에 대해 ‘노동계와 지역사회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원칙이 환경 특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통합 조정 권한, 원스톱 승인, 간주제가 결합하면 개발 권한과 환경 검토 권한이 한 축으로 모이고, 법률이 아닌 행정 판단으로 특례 범위가 넓어질 우려가 있다.

(4) 국가 기후·생물다양성 목표의 예외 지대가 된다

반도체·데이터센터 클러스터는 막대한 전력과 물을 요구하고 불화가스를 배출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30x30 목표를 지키려면 메가특구 사업도 기후변화영향평가와 생물다양성 영향 검토를 통과해야 한다. 특례가 이를 줄이면 메가특구는 국가 기후·생태 정책의 예외 지대가 될 것이다.

6. 몇가지 원칙들

- 특구 지정 전 권역 단위 전략환경영향평가·누적영향평가 의무화. 용수 용도 변경에 따른 지역의 광범위한 영향(섬진강 재첩 등)은 물론 누적영향, 사후영향 등의 설계가 필요하다.
- 절대 특례 불가 영역의 법률 명시. 세계유산과 그 완충지대, 법정보호종 서식지와 국가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백두대간·생태축 핵심 구간, 재해 위험 산지·하천에는 어떤 단축·간주·

통합 특례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 인허가 간주제는 환경 분야에서 삭제. 기한 초과 시 자동 승인이 아니라 상급 기관 이관이나 공개 조정으로 넘겨야 한다.
- 조사 생략 불가. 후보지 거론 시점부터 국가가 사계절 조사를 시작하고, 조사 자체를 단축하거나 생략하지 않아야 한다.
- 첨단산업 맞춤형 평가 항목 신설과 환경 협의 역량 강화. 화학사고·PFAS·용수·온실가스 항목을 필수화하고, 협의기관에 전담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며, 사후 모니터링과 정보공개를 일반 사업보다 강화해야 한다.
- 환경 특례의 사회적 합의 절차 회부. 정무위 심사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을 공식 청취하고, 지역 주민·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며, 특구 지정 시 주민 의견 수렴과 지방의회 동의를 요건으로 두어야 한다.

7. 결론을 대신하여

지속적으로 물어야 할 질문은 ‘빨리 지은 뒤 무엇이 남는가’이다. 4대강은 단축된 평가가 남긴 비용이 사업 이후 십수 년 동안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 주었고, 새만금은 부실한 평가가 결국 법정에서 사업 전체를 멈춰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환경규제는 투자의 장애물이 아니라 공적 지원을 받는 사업이 그 비용을 지역과 미래 세대에 떠넘기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그 장치를 개발 추진 조직에 맡기고 지역끼리 특례를 경쟁하게 만들면, 규제는 포획되고 기준은 바닥으로 내려간다.

세계유산으로 막 확대 등재된 갯벌 옆에서,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첨단산업을 유치하면서 평가를 줄이는 것은 국제사회와 지역 주민 모두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다. 법안은 아직 발의 전이다. 노동특례가 사회적 대화에 회부된 지금이 환경 특례를 같은 수준으로 공론화할 시기다. 국회는 ‘전격전’의 속도가 아니라 검증된 속도로 이 법을 다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어떤 메시지를 갖고 시민들을 만날 것인지, 주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지 고민하는 것이다. 새만금을 비롯한 대형국책사업, 개발사업이 준 교훈은 효과적인 보호지역 관리를 위해, 보호지역의 지정과 관리를 위해 핵심적인 것은 주민들이 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헤럴드경제, 李 대통령3대 메가 환경평가'속도전' 주문(2026.7.6)
- 데일리안, 靑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추진...인허가·환경영향평가 단축"(2026.8.10)
- 이데일리(네이트), 연내 메가특구법 제정·1호 특구 지정(2026.8.4)
- 네이트뉴스, 메가특구 그린벨트 해제 전 형질변경 허용 등(2026.9.6)
- 한국경제, 민주당 메가특구 공약 발표(2026.5.13)
- 서울경제, 메가특구법9월 발의 무산(2026.9.28)
- 경향신문, 3대 메가프로젝트'속도전'에 환경단체'형식적 환경영향평가 우려'(2026.7.30)
- 프레시안, 행정통합법환경평가 권한 비판(2026.3.3)
- 참여연대, 2026 정기국회 현안과제: 3대 메가프로젝트 검증
- 뉴시스, 감사원4차 감사: 환경영향평가 축소·수질 우려 삭제(2018.7.4)
- 프레시안, 4대강 환경영향평가'줄속'과'부실'
- 프레시안, 4대강 조사위원 "생태 분야 총체적 부실"
- 서울신문, 감사원1차 감사"4대강사업 법적 문제없다"(2011.1.28)
- 경향신문,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무안 확정(2026.8.28)
- 국가유산청, 「한국의 갯벌」 2단계 세계유산 확대 등재(2026.7.26)
- 경향신문, 무안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류 충돌 우려"(2024.12.29)
- 네이트뉴스, 무안갯벌은무안공항과15km 거리(2024.12.30)
- 경향신문, 새만금 신공항1심 기본계획 취소 판결과 항소심(2026.10.8)
- 노컷뉴스, 새만금 공항 항소심 선고11월18일 연기
- 에너지데일리, 서남권 반도체 산단 일일65만톤 공급방안(2026.6.30)
- 전남일보, 동북댐'증고→증축'...하류에 새댐(2026.9)
- 전자신문, 서남권 반도체 용수망 예타 면제 추진(2026.8.10)
- 세계일보, 동북댐 확장 예타 면제 추진(2026.8.12)
- DASEnvironmental Experts, PFAS in semiconductor manufacturing(2025.5.22)
- Stigler, G. J. (1971).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2(1): 3-21.